KOSHA GUIDE

H - 152 - 2021

질산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

2021. 10.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ㅇ 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강영중
- ㅇ 제정 경과
 - 2014년 11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법령 및 규격 최신화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.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생물학적 노출평가 기준 및 분석방법 연구 I 크실렌 등 유기용제 16종. 보건분야-연구자료 연구원 2010-64-880. 2010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24] 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 의 검사항목(제206조 관련)
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1호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)
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(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)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」제1권 특수 건강진단 개요.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http://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0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질산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제안 개요

I. 제정이유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고 한다)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고 한다) 제206조(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) 별표 24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1호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)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(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)에 따라 질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노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

II. 제정(안)의 주요내용

- 질산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인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의 분석을 위해 시료 및
 표준용액 전처리, 기기의 조건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해 기술함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관련 별표 24의 유해인자인 질산의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에 대한 분석 지침 반영

III. 관련 법규정 및 규격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206조 별표 24(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수 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)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1호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)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(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)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」제1권 특수 건강진단 개요.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

IV. 제정위원회 심의개요

ㅇ 제 안 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강영중

ㅇ 심 의 일 : 2014년 11월 18일

ㅇ 참석인원 : 재적위원 14명 중 8명 참석

ㅇ 심의결과 : 제출안에 동의함

KOSHA GUIDE H - 152 - 2021

질산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고 한다)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고 한다) 제206조(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) 별표 24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1호(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)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(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)에 따라 질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법,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질 산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.

3. 정 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생물학적 노출평가"란 혈액,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정도나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나) "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"이란 생물학적 노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체내 흡수 정도를 반영하는 물질로서 유해물질 자체나 그 대사산물, 생화학적 변화물 등 을 말한다.
- (2) 그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KOSHA GUIDE

H - 152 - 2021

4. 분석장비

분석 장비는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 (ultraviolet/visible spectrophotometer; UV/VIS Spectrophotometer)를 사용한다.

5. 분석방법

(1) 분석 원리

백색 발연 질산은 이산화질소를 0.5% 포함하고, 적색 발연 질산은 이산화질소를 14% 포함한다. 질산에 포함된 이산화질소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의 메트헤모글로 빈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을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로 분석하다.

(2) 시료의 채취

(가) 시료채취 시기혈액 시료 채취는 하루 중 아무 때나 한다.

(나) 시료채취 요령

- ① 근로자의 정맥혈을 EDTA(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) 또는 헤파린이 미리 처리된 튜브와 1 회용 주사기 또는 진공 채혈관을 이용하여 2 mL 이상 채취한다.
- ② 채취한 시료는 시료 채취 용기에 밀봉하여 채취 후 바로 또는 1시간 이내에 분 석하며, 분석 전까지 4 ℃(2~8 ℃)에서 냉장 보관한다.

(3) 기구 및 시약

(가) 기구

- ① 용량플라스크 500, 100, 10 mL
- ② 마이크로피펫 1-5 mL

KOSHA GUIDE

H - 152 - 2021

- ③ 유리 시험관 10 mL
- ④ 석영 cell
- ⑤ 롤러 믹서
- ⑥ 화학 저울

(나) 시약

- ① 제1인산칼륨(KH₂PO₄) 136.09
- ② 제2인산칼륨(K₂HPO₄) 174.18
- ③ 페리시안화칼륨(K₃Fe(CN)₆)
- ④ 시안화칼륨(KCN)
- ⑤ 탈이온수(18 MΩ/cm 이상)

(다) 주의 사항

- ① 채취한 시료는 채취 후 바로 또는 1시간 이내에 분석한다.
- ② 시안화칼륨은 맹독성 물질이므로 취급에 주의하고,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, 장갑, 마스크를 착용한 후 후드에서 작업한다.

(4) 시약 조제

(가) 인산 완충용액

50 mL 용량플라스크에 제1인산칼륨 (KH_2PO_4) 652 mg, 제2인산칼륨 (K_2HPO_4) 475mg을 넣고 탈이온수로 표선을 맞추어 인산 완충용액을 조제한다.

(나) 페리시안화칼륨 용액

10 mL 용량플라스크에 페리시안화칼륨 $(K_3Fe(CN)_6)$ 2 g을 넣고 탈이온수로 표선을 맞추어 20% 페리시안화칼륨 용액을 조제한다.

(다) 시안화칼륨 용액

10 mL 용량플라스크에 시안화칼륨(KCN) 0.5 g을 넣고 탈이온수로 표선을 맞추어 5% 시안화칼륨 용액을 조제한다.

KOSHA GUIDE H - 152 - 2021

(5) 시료 전처리

- (가) 모든 시료는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40분간 롤러 믹서로 균질화시킨다.
- (나) 10 ml 시험관에 혈액 0.1 mL와 증류수 3.9 mL를 넣고 혼합하여 용혈시킨 후 인산 완충용액 4.0 ml를 가하여 혼합한다.
- (다) 10 분간 방치 후 2,000 rpm에서 원심분리한다.
- (라) 상층액을 두 개의 석영 cell에 3 mL씩 넣고 이 중 한 cell에만 페리시안화칼륨 용액 0.1 mL를 가하여 혼합한다. 혼합하여 2분 후 630 nm에서 증류수를 공시료로 측정 한 흡광도를 Aa와 Ba로 기록한다.
- (마) 측정한 후의 석영 cell에 시안화칼륨 용액을 0.1 mL씩 첨가한 후 혼합하여 5 분 후 다시 측정한다. 이 때의 흡광도를 Ab와 Bb로 기록한다.

(6) 농도 계산

측정한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메트헤모글로빈의 농도를 계산한다.

 $metHb(\%) = 100 \times (Aa-Ba/Ab-Bb)$

(7) 생물학적 노출 평가 기준

1.5%